

수원지방법원 2021. 9. 9 선고 2020나96610(본소), 2020나96627(반소)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의
소 등 · 손해배상(기)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

담당변호사 설은주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

담당변호사 이명률

변 론 종 결 2021. 8. 12.

판 결 선 고 2021. 9. 9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. 11. 10. 선고 2018가단522498(본소), 2019가
단501368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, [별지 1]도면 표시 물건을 인도하고, 5,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88,753,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21행의 ‘1. 납품장소: 피고 지정 장소’ 부분을 ‘1. 납품장소: 원고 지정 장소’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(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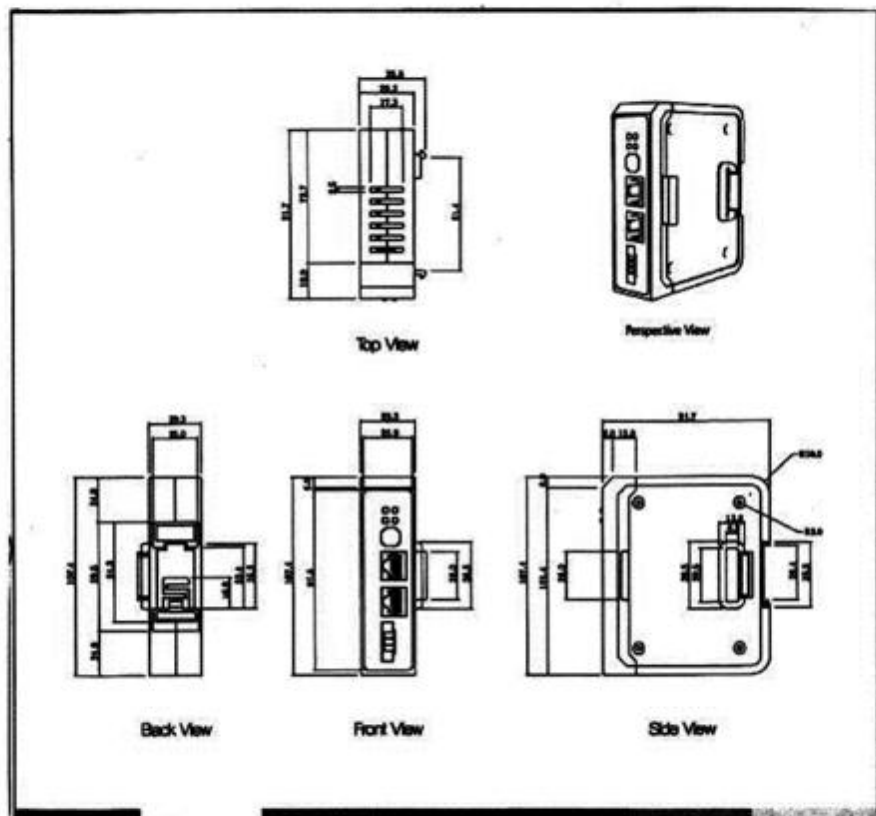
2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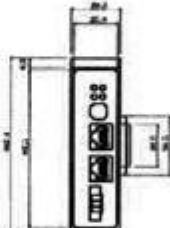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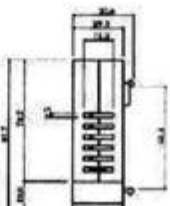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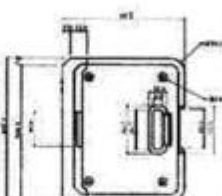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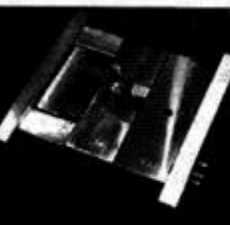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광진, 판사 이효진, 판사 이국현

[별지 1]

도면



제작도면이미지 [Front View] 	금형 결과물 	용도설명
제작도면이미지 [Top View] 	금형 결과물 	용도설명
제작도면이미지 [Side View] 	금형 결과물 	용도설명

